

의정부지방법원 2023. 8. 16 선고 2022가단11812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

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유병일, 방인석

피 고 주식회사 C

변 론 종 결 2023. 7. 12.

판 결 선 고 2023. 8. 1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,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)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,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보조참가인은 2017. 11. 7. A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 한다)가 E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, A은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.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20. 3. 9.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했고, 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은 2020. 9. 11. E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116,465,696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나. A은 2019. 12. 5. 고양시 덕양구 F건물 G호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만 한다)에 관하여 피고에게, 원인 2019. 12. 4.자 설정계약, 채권 최고액 1억 원, 채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등기’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다. A은 이 사건 근저당등기를 설정할 당시 적극재산은 3필지 부동산 감정평가액 합계 709,638,000원 상당이고, 소극재산은 피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약 10건의 채무 합계 861,383,510원 상당이어서, 적극재산 보다는 소극재산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라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사건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, 위 법원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35,566,41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, 원고보조참가인이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자 위 배당금을 별지1) 기재와 같이 공탁하였다.

마. 한편 채무자 A은 2021. 12. 2. 14:00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, 원고가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,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, 2항,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으로 부터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17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, 을 제1~6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1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, 대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원고가(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 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, 이하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나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등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편의상 모두 원고로만 기재하기로 한다)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등기 이후에 발생하기는 하였다.

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, 원고는 A과 관련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구상금 채권의 발생

기초가 될 수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였다. 또한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 연체라는 보증사고 발생일인 2020. 3. 9.과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설정된 2019. 12. 5.은 그 시간적 간격이 약 4개월에 불과하고, 이에 더하여 당시 소외 회사나 A의 경제적 상황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근저당등기 설정 당시 이미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,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,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1다98945 판결 등 참조).

3. 피고의 악의 여부

가.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등기 설정 당시 A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(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).

나. 나아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지에 관하여 본다.

그런데 을 제1~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, ① 피고는 2011년경부터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, 대금에 대한 계좌이체를 하며,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여 온 사실, ② 이 사건 근저당등기를 설정한 2019. 12. 5.을 기준으로 그 무렵인 2019.에도 피고가 소외 회사에 약 2억 4천여만 원 이상의 물품을 제공하였고, 소외 회사의 채무가 가장 많았던 2019. 7. 31.경에는 1억 2,5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, 2019. 12. 5.에도 그 채무 잔액이 72,530,493원으로 상당히 많이 있었던 사실, ③ 그와 같은 사정에 따라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에게 지속적으로 담보 제공을 요청하였고, 그 요청에 따라 그 무렵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.

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등기를 설정할 당시 A의 재산 상태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,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오랜 기간 거래가 있었고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등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상당한 채권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, A의 사해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, 오히려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용두

별지1)

채권목록

위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[] 부동산
산입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[]
[]에게 배당된 금 35,566,417원 및 그 공탁이자에 대한, 피고 주
식회사 []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지금청구채권. 끝.

